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 BUT 주총결의 및 정관 규정 없음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11041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85535 판결



## 1. 사안의 개요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고의 선택권 행사에 대해 피고가 교부할 주식은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주로 한다.

#### 제4조(행사가격)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주당 금액은 1,500원으로 한다.

#### 제6조(행사기간)

선택권은 2015. 10. 12. 이후 2020. 10. 11.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행사하지 아니한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2016. 8.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 장관규정 및 주총 특별결의 없음, 스톡옵션 무효

### 3. 1심 법원의 판단요지 - 스톡옵션 부여 무효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바(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먼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장관규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주총회 의안을 "정관 변경의 건"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 의안에 관하여 출석주주 전원의 일치에 의하여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다른 주주총회 의사록과는 달리,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2012. 6. 2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경우에는 '1주 금액 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 (예정) 주식의 총수 변경의 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조항 추가의 건'의 3개의 안건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이를 건건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개정 정관안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그 기재의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은 위 주주총회에서 심의나 의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다른 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존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4. 항소심 법원의 판단요지 - 임시주총 스톡옵션 부여 의결만으로는 정관 규정 없는 하

##### 자 치유 불인정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가사 2012. 6. 25. 피고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항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건이 심의, 의결되지 않았거나, 정관 변경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2012. 6. 25.자 주주총회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회사의 정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2. 10. 5., 2013. 2. 8.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